#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42

발의연월일: 2021. 8. 5.

발 의 자:이정문・기동민・김병기

김철민 · 도종환 · 문진석

민형배 • 안민석 • 이용빈

임호선 · 황운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미성년인 자녀로"를 "25세 미만인 자녀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를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모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 있으면 25세가 된 경우에도 25 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 급하다. -----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보상금 지급에 관한 <삭 제> 특례) 2013년 7월 1일 전에 제 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 을 권리가 발생한 사람(성년이 된 경우에도 지급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20세 미만까 지 보상금을 지급한다.